【 기간제근로자 근무수칙 】

제1조(목적) 기간제근로자 사역시행과 관련하여 참여자(이하 근로자라 한다)의 근무수칙을 제정, 원활한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제2조(근무시간)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업의 특수성으로 야간·조기근무 등의 사업은 별도 조절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금) 임금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한다.

제4조(근무지) 사업시행 부서에서 정한 장소를 근무지로 한다.

제5조(근로수칙)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항(근로배제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업 시행 부서장이 근로에서 배제 할 수 있다.

1. 근로 중 음주, 추태 등 다른 근로자 및 주민에게 불안 불쾌감을 주고 근로를 방해 하는 자
2. 근로자 상호간 또는 감독자에게 폭력·폭행·가혹행위를 한 자
3. 근로기간 중 사기, 강도, 절도, 강간 등 반 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한자.
4.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에 참여한자 및 참여시킨 자.
5.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자, 근무중 2회이상 무단음주를 한 자

제2항(근로배제 또는 타 사업장 배치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업 시행 부서장이 근로에서 배제 할 수 있다.

1. 감독자의 정당한 근로지시를 거부한 자
2.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 행위를 한 자
3. 타인의 근로를 방해한 자
4. 근로중 안전수칙 미 준수자
5. 근로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거나 이석한 자
6. 행정 사무 보조 근로자로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을 야기한 자
7.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
8. 파벌조성 등으로 근로사업에 위해한 행위를 한 자
9. 근로자 상호간에 인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자
10. 기타, 근로자의 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당해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6조(기타) 기타 본 수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.